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홍지광 의원)

의안 번호	26-8
----------	------

발의년월일 : 2026. 1. .

발의자 :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김승수, 남해석,
안미자, 이한동, 차해영,
채우진, 최은하

1. 제정이유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라. 투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관계법령

-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6. 1. 9. ~ 1.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동호인·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6.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9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요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에 따른 사업비 발생

관련 조문: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옥성현
연락처	02-3153-8363